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7월 23일, 어기구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4.8.27.)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4.11.21.)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안전조정위원회(2024.11.21.)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1.) 상정, 소위심사보

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어기구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업재해로 인한 생계구호와 피해복구를 보조 및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그 피해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농어업인 재해의 경우 피해복구비 지원단가는 실거래가의 60% 수준이고, 농어업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수산양식물 등의 보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으로 보상받고 있는데, 가입률은 50%대로 저조한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할 때에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고,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 외의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농가와 어가를 보호하여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4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보조 및 지원

☐ (실거래가 수준 및 물가상승률 고려한 지원)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관계 부처와 실거래가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재

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정하고 있음.

보조 및 지원의 기준에 실거래가 수준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보험 미가입 농가 지원 및 보험목적물 정의 규정 신설

□ 2024년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농작물의 품목은 총 73개이지만 전국에서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모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님.

품목마다 가입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서 차이가 남.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대파의 경우, 전국에서 가입이 가능하나, 쪽파(실파)의 경우 충남 아산, 전남 보성으로 대상 사업지역이 제한되어 있음.

2023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52%로 여전히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가 다수 존재함

개정안은 보험대상 품목과 지역 등의 제한으로 인하여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려는 것으로, 농업환경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그 입법취지는 타

당하다고 보임.

- 그러나 이 경우 보험 가입의 유인이 없어지므로 많은 농어민이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는 등 역효과 발생이 우려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원택)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안전조정위원회 심사내용

(안전조정위원회 위원장 주철현)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조정안으로 의결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7.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8.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